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1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우형찬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해 서울시 내 각 학교별 외부 현장교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안전대책 등의 점검을 위한 안전계획 및 사전답사 등의 조항 마련을 통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으로 제명 수정.
- 나. ‘사전답사’와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학교장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신설하여,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점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학교장의 ‘사전답사’와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41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여 만에 사회 일상 회복을 맞이함에 따라, 각 학교에서도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금년 3월 초·중·고 총 1,320교에서 신청받은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은 601개로 작년 추진된 수(201개)의 3배 정도였으며, 수련회 계획도 작년(143개)의 약 4.5배인 640개가 접수되었습니다.¹⁾
- 그러나 지난 6월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 관내 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²⁾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 조문별 검토

1) 제명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자료: "정말 수학여행 갈 수 있나요" 3년 만에 복직하는 교실(연합뉴스, 2023.4.1.)

2) 보도자료: 수학여행 버스·트럭 등 7대 추돌...80여 명 부상(KBS, 2023.6.16.)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는바 기존 제명에 “학생안전관리”를 추가하는 것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동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사전답사”를 정의하면서 사전답사를 온라인 답사와 현장답사로 구분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전답사”를 정의한 법령은 없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침³⁾을 살펴보면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하 “1일형”)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하 “숙박형”)과 달리 현장답사를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제3호는 현장체험학습 중 1일형은 현장답사 생략이 가능한 점을 반영하여 사전답사를 온라인답사와 현장답사로 구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학교장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⁴⁾ 따른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

3) ‘2023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2023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4)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

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구축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계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전답사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해 사전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전답사 시 파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숙박형의 현장답사를 미 실시해도 된다는 학교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와 같이⁵⁾ 1일형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반영하며, 숙박형은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에서 사전답사를 현장답사로 수정하고, 1일형의 사전답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6조(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① 교육감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이하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이 교육목적에 맞게 인권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기관 및 시설에 사전 안전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 상황과 실무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안전성을 판단한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은 교육적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사에 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 8. 22.).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사전답사의 하위개념으로 온라인답사와 현장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은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시 온라인답사를 하든지 현장답사를 하든지 모두 교육장소 및 시설에 대해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동 조항이 교육청의 주장과 같이 숙박형의 현장답사를 미실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답사 시 교육청에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⁶⁾ 1일형에 대해서는 교육장소 및 시설에 대해 온라인답사를 하면 되고, 숙박형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 장소와 시설에 대해 직접 미리 현장답사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에 대한 검토(안 제9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숙박형의 경우 운영 지침에 ‘인솔·지도교원은 차량이나 시설 사용 전에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교육활동 시의 안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⁷⁾ 명시되어 있는 반면, 1일형의 경우 운영 지침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 제9조제2항이 이를 규정한 것은 1일형의 안전관리 및 확보 측면에

6) ‘2023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2023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7) ‘2023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36p.

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전답사”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사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온라인답사’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답사’로 구분된다.

4.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이란 학교 밖 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

제8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을 “안전교육”에서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생 략)

<신 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제7조(안전교육) (생 략)

<신 설>

제8조 · 제9조 (생 략)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